

##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53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2. 5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이 2025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하고자,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
- 나. 위탁의 필요성
-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의 최초 설치 및 연장허가 시, 기타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광고물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소요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 필요
- 다. 위탁사무 내용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,

제9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재난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

- 안전점검 합격 처리 후 발생하는 제반사항(인명 및 재산피해)에 대한 책임

라. 위탁기간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년)

마. 수탁자 선정방법: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사

바. 2026년 소요예산: 없음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검토항목	검토내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건축사,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</li> <li>○ 해당 업무는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</li> </ul>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성 확보</li> </ul>
3. 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접 운영할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 채용이 필요하며,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</li> </ul>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함</li> </ul>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기적인 실적 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</li> </ul>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 법령 및 위탁·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 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</li> </ul>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</li> </ul>

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

동법 시행령 제38조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6조, 제17조 및 제18조

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# 4. 추진일정

가.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: 10월

나.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: 10월 ~ 11월

다. 지정기관 선정: 10월 ~ 11월

라. 지정협약 체결: 12월

**붙임**

**근거 법령**

**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**

**제9조(광고물등의 안전점검)**
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등(제3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·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(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)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**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**

**제38조(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)**

-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  - 1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
  - 2.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
3. 건축·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,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, 검사요령,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### 제16조(안전점검 업무 위탁)

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
2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옥외광고·건축·전기분야의 기술자격 (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4.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

### 제17조(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)

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.

1. 사무실
2. 작업차량, 사다리, 절연저항계, 카메라, 망원경
3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

### 제18조(안전점검 위탁절차 등)

-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, 위탁기간, 위탁받을 자의 임무, 관계서류의 제출시기,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 제6조(승인 및 동의)

-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 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  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